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3가단26201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11. 29.

판 결 선 고 2023. 12. 20.

주 문

1. 피고는 36,000,000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0,831,293원 및 이 중 30,001,820원에 대하여 2023.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1, 2, 3,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은 원고로부터 법인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피고는 신용카드사용대금에 대하여 3,6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D은 2023. 4. 20. 기준으로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금 30,001,820원, 연체료 829,473원, 합계 30,831,293원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 약정 지연이자는 연 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D이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받아 기업회생 인가를 앞두고 있고 주채무자가 회생 계획안에 따라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연대보증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고는 개인회생 신청 중에 있다고 한다. 회생신청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